

# 불량추 단속에 앞서 업자들의 각성과 보다 강력한 축산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 광 영  
〈대한양계협회부산경남지부총무〉

## ★ 업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76년에 들어서 수차에 걸쳐 당지부 관내에 있는 부정부화업자 단속 및 계몽을 실시하였다. 몇가지 느낀 소감을 공개하여 명량한 축산풍토를 조성하는데 이바지된다면 그보다 나은 행한 일이 없겠다.

당지부 관내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자들로 난립되어 있다. 크게 나누어 보면

- ① 등록종계를 직영하고 등록을 필한 부화장
- ② 부화장은 등록되어 있고 종란업자나 다른 등록된 부화장에서 공급받는 부화장
- ③ 부화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종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화장으로 구분하여 볼 때 단속의 대상은 자연 ③항에 해당되는 부화장으로 구분하여 볼 때 단속대상은 자연 ③항에 해당되는 부화장이다.
- ①②항에 해당되는 부화장은 종계관리가 철저히 잘되어있고 부화장시설도 기준에 적합하게 갖추고 있어서 단속과계몽이 필요 없었으나
- ③ 항이 문제이다. 변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종계를 신청하였으나 구입치 못했으니 차기에 구할때까지는 어쩔수 없이 좀 가동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쨌든 부화해야겠으며 고발할려면 하라는 식으로 벌금형을 작오하고 꼭하겠다는 뻔뻔함도 있다.

시군 번두리 지역에서 1대나 혹은 2대 (10,000이하입란용) 정도의 영세부화업자들은

종계를 구할 재력도 없으나 단속에 순응하고 계몽도 잘되나, 과거에 명성이 좀 있고 3대 혹은 4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업자들은 뺏◯형에 속하며 추대가격도 자기나름되로 계산하여 텀핑행위를 일삼고 기존등록업자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며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며 죽으면 같이 죽자는 식의 파격파도 있다. 이런 류형의 몇몇 사람들만 제외하고나면 많이 개선되었고 질서가 잡혀진 셈이다.

## ★ 당지부 관내가 질서잡히면 타지역업자에게 유리해진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인접도에서 세미와 불량추(잡종)가 많이 양산되고 있으며 실지로 구입된 것을 확인했다. 상당히 명성들이 있는 부화장들이라고 들었다. 자발적인 각성이 촉구된다. 불량추단속은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실시하고 효과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각지역에서 강력히 실행되어야 소기의 목적에 도달되리라 믿으며 현행 축산법 제12조에 위배 되며 선량한 전체 사양농가를 보호하는 뜻에서 하루속히 지양되어야 한다. 불량추는 폐사율, 질병감염율과 성장율이 다른 합법적인 품종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고로 사양농가는 이점을 감안하여서 품종보증서를 확인한 연후에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리라 믿는다. 속담에 싼게 비지떡이란 말도 있으나 불량추를 비위적덕으로 대량 생산하여 장거리 수송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병아리는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결국폐사율이 높아 오히려 지방에서 구

입하는 것보다도 생산원가가 더 높다. 당지부 관내 선량한 부화업자들은 타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다. 불량추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또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다. 확인되는대로 가차없이 관할행정 당국에 고발 조치하여 의법조치케 하겠으나 고발에 앞서 신속히 자각하여 불량추 생산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 보다 강력한 축산법이 시급히시  
정되어야 한다

현행 축산법 제12조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때는 법정 최고 형이 벌금 3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법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보다 강력한 축산법이 개정된다면 빨리 근절될 것이라 생각된다. 1차고발을 당하여도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최소한 약 2개월이란 시일이 소요된다. 2번 받으면 성수기는 이미 지나간다 고발을 받어도 계속 입란을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기세를 부리며 많은 입란을 자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2차 고발을 받으면 어느정도 가중되는 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업자 자신들이 명량한 축산 풍토를 조성하는 뜻에서 자각하여야 될 것이다.

일손이 바쁜 관계 당국에 괴로움을 주는 처사는 곧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미등록부화장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여 과세를 하겠끔 유도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이 한전에 협조를 얻어 불량추생산을 중단할 목적으로 단전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미등록 부화장에 한해서는 입란하기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의 재가를 얻어 부화기에 봉인조치를 취하고 위배될 때는 보다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하여 벌칙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의 모든 방법을 강구하기 이전에 업자들 스스로가 준법정신에 입각하여 당국과 사육농가와 다른 업자들에게 적극협력하는 뜻에서 규정에 위배되는 부화는 하루빨리 근절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가 축 예 방 약

◎ 치 료 제

◎ 소 독 약

◎ 사 료 첨 가 제

◎ 기타국내외약품

총판

상담수의사: 연 두 희

★ 가축질병상담

★ 지방주문환영

TEL 주간 97-8779  
야간 96-923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54

청량리 오스카극장 앞,  
한일은행 청량리지점 옆

